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승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0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1월 11일

발 의 자 : 이승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고병국, 김평남, 김혜련,
문병훈, 송도호, 송아람,
우형찬, 이광성, 이광호,
이병도, 이은주, 정지권,
정진술, 정진철, 채유미,
최 선, 한기영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시내버스 내 위생, 방역과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. 또한 여객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사업자에게 시내버스 차량 내의 위생, 방역 등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(안 제9조의 제7항)
- 나.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권리 및 정해진 안전수칙 준수하며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(안 제10조의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,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은 사업자에게 시내버스 차량 내의 위생, 방역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시민은 시내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.
 - 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내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시내버스 내의 위생,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2. 사업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
4.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 시장은 사업자에게 시내버스 차량 내의 위생, 방역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0조의2(시민의 권리와 의무)</u></p> <p><u>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</u></p> <p><u>② 시민은 시내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1조(안전운행 방안) ①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1조(안전운행 방안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 시내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</u></p>

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시내버스 내의 위생,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
2. 사업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
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

4.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